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기 타 사례 01 < 2022서울조정111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회사 분식회계 의혹 보도와 관련, 소액주주인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만간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한 제약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제약회사 관련 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조정대상보도 당일 주가가 하락해 주주로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실명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고, 기사의 주된 취지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자는 제약회사 또는 그 계열사나 각 대표자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보도에서 특정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신청인과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보도는 몇 년 간 금융당국의 감리가 계속된 사실을 반영해 향후 조치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전망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며,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제약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당일 주가 등락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중략)**

XX일 △△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 3사(○○○○, ○○○○□□□□, ○○○○◇◇)에 대한 20XX~20XX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XX월 X일부터 지난 X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오는 XX일 ○○○○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략)** 금융권에서는 증선위가 대선 전에 ○○○○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시총 XX위인 ○○○○의 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 타 사례 02 2022서울조정279·280·281, 282·283·284(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기각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뉴스 제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보 의뢰받았음에도 2주가 지나도록 관련 보도가 나가지 않았고,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자 다음 날 한 인터넷 매체가 아무런 취재 없이 제보 내용만을 반영해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제보대행사 대표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롱하듯 반말로 쓴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제보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제보자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최종 환불해 주었고, 환불 금액 수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이지 제보자에게 무조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조롱하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중재부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등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방송에서 제보대행사 홈페이지의 홍보 문구 부분만 공개된 점, 보도내용에 홈페이지 전체 화면이나 상호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및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도에서 지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가 제공(Inlink)한 기사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개별적 연관성 부정을 이유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짐



조정대상보도

최근 기자들에게 특정 형식을 갖춘 이메일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제보는 누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이 제보 메일에는 제보자 말고도 업체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다. **(중략)**

과거 이곳에 제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의뢰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보자는 임대인과 전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대행사에 30만 원을 주고 제보를 의뢰했습니다.

(중략)

결제 하루 만에 기자들 메일로 제보 내용은 일괄 전송됐지만, 일주일도 지나도 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행사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뉴스 제보대행사 직원 : 그쪽(지상파)에서는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아예 제보팀이 따로 있어서...]

2주 넘게 기다리던 제보자는 환불해 주지 않으면 대행사 측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기사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게 전화 한 통도 없이 제보 내용만 보고 쓴 기사였습니다.

당장 제보자가 언론사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론사 측이 대행사 측에 연락해 환불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언론사 대표 : 제보한 사람(제보대행사 측)한테 전화해서 이걸 돌려주라고 할게요. 돈만 돌려주면 되겠네.]

하지만 제보대행사 측은 돈을 돌려줄 수 없고, 기사도 나갔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제보대행사 대표는 오히려 조롱하듯 반말로 쓴 메일을 보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글도 의심스럽습니다. **(중략)**

뉴스 제보대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의뢰비 30만 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기 타 사례 03 2022서울조정815·816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판결문 내용을 압축, 요약한 기사 표현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은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통한 불법 대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온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면서, 검찰이 이들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신청인 회사는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고한 파기 환송판결의 주된 내용은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해 원심(고등법원)이 추가적으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회사가 추진하던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좌초될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 본문 중 ‘대법원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 판결’, ‘대법원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등의 표현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을 압축·강조한 것으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기사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 역시 적시되어 있어 조정대상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론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정대상보도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

사회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언론사로서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대법원 판결 등을 발췌 게재 한바 보도의 적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며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통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온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불법 대출’ 혐의만 기소하고,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사건은 수년 전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을 경찰이 따로 인지해 약 2년간 재수사한 끝에 결론을 뒤집고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반대 근거로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떨어져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 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반대 사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략)**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서 “ㄴ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은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이후 결정된 일로, 검찰의 ‘부실 기소’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C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의무이행 소송에서 “C 씨는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ㄱ사가 C씨를 통해 ㄴ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는 경우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 자리에 사람을 보낸 ㄱ회사나 그 대표이사도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ㄱ사의 회장 등과 C 씨의 관계, 의료인으로서의 C 씨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한 의료인 고용이나 명의대여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후략)**



기 타 사례 04 2022서울조정1750·1751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기각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도과되었을 때 비로소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인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당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찰 주지 스님의 배우자이자 주지 스님의 극단적 선택 후 실질적으로 사찰과 사찰의 신도들을 보살피고 있는 자로서, 보도된 상해치사 범행 당시 신도들은 아들을 때리는 어머니를 수차례 말리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응급처치를 한 점이 인정되어 경찰수사에서 상해치사방조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추측성 내용과 관련자의 일방적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해 신청인의 사회적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목격자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사실에 관한 것이고, 사망한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를 접수한 후 경찰과 주지 스님, 신도 등 사찰관계자에 대한 추가 취재를 거쳐 확인된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했으며, 가사 보도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며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취지가 신도들이 범행을 말리지 않아 방조한 혐의가 의심되고,

나아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절이 수상하여 범행에 개입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종국적 수사종결처분에 해당한다며 추후보도 게재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사건기록,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인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및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연장 가능)에 언제든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었을 때 비로소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도들의 상해치사방조혐의에 대해 20XX년 6월 30일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지만 조정신청은 8월 30일에 접수된바 아직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대상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위 상해치사 범행을 보도한 2개 매체를 상대로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다른 2개 매체를 상대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재부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지 않아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 기각 결정을 내렸음

조정대상보도

① ○○에 있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인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주지 스님을 비롯해 3명이 이런 가혹한 폭행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인 부인의 행동과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숨진 아들 아버지 :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이 절은 등기부등본에는 영풍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지 스님과 신도 2명은 당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② **(전략)** 권 씨는 아내가 아들을 3시간 반이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폭행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략)**



이렇게 잔혹한 폭행을 정말 64살의 어머니가, 그것도 혼자서 저질렀다는 것일까. 절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의 결론은 놀랍게도 ‘그렇다’였습니다. **(중략)**

오후 7시 11분,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이후 50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중략)**

권 씨는 아내의 행동에 사찰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중략)**

3시간 반 동안 폭행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당시 CCTV 기록을 보면, 목격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사찰 관계자이기도 한 여성 신도와 남성 신도, 그리고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경찰에서 “훈계를 하는 줄 알고는 산에 나갔고, 뒷일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맞았는데, 다른 신도들 역시 “아들이 자주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체벌한다고 생각해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후략)**

기 타 사례 05 2022서울조정2009·2010, 2011·2012/2013·2014**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라디오,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보도와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기사의 '피묻은 빵'이라는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피묻은 빵, 죽음으로 반죽한 빵,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후 관련 제품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에서 '피 묻은 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불매운동을 언급해 가맹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핵심은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보도에서 신청인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명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그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 한 사람에 불과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청인이 보도에서 문제 삼은 부분 즉 '피 묻은 빵'이라는 표현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피묻은 빵, 죽음으로 반죽한 빵. ○○○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스물세 살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후 관련 제품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회사 측 대응을 보면 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동료들은 사고 다음 날도 사람이 끼었던 그 기계 옆에서 허술한 근무환경 그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중략)**

○○○ 그룹 계열사인 △△△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중략)**

사고 8일 전에도 □□노총은 △△△ 공장에서 손목이 끼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노동부는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SNS 상에서 피묻은 빵 안먹겠다.. 규탄 성명과 불매운동까지 확장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중략)**

너무나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일하는 직장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 타 사례 06

2022서울조정1455·1456·1457/1458·1459·1460,
2022서울조정1461·1462·1463 (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유튜브채널

처리결과 각하

언론조정신청서, 언론사 측 답변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회사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인이 남긴 기록, 유가족과 여러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취재한 결과 이 죽음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죽음이라고 보인다면 '과로자살'로 표현하고, 동료들은 센터장 취임 이후 도입한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센터장인 신청인은 본인이 도입한 업무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세져 야근이 잦아지는 등 과로에 시달린 부하 직원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고인의 산재판정을 담당했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및 회사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과로자살'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공익적 보도로서 회사 조직문화개선위원회 보고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종 성명서, 직장동료와 고인의 유가족 인터뷰 등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만큼 해당 보도는 진실성과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앞서 20XX년 2월 4일 글을 게재하면서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4월 2일이 아니라 늦어도 2월 4일에는 조정대상보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돼, 이 사건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확실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신청은 20XX년 6월



30일자로 접수되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 피신청인 언론사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같은 해 4월 2일로 기재하였으나 조정신청서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이 보도 직후부터 2월 7일자 산재판정 이전에 보도에 대해 인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월 4일자에 게재한 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4월 2일이 아닌 2월 4일 또는 2월 7일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① ○○자동차 △△ 연구소는 ○○차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1년 4개월 전, 이 연구소 □□□ 센터의 한 팀장급 직원이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는 고인이 남긴 기록, 유가족과 여러 동료의 증언,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죽음이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과로 자살. (중략)

☆☆ □□□ 작업에 참여했던 이▽▽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중략)

이 씨는 정신과에서 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중략)

복직을 한 달 앞둔 2020년 9월 7일,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② □□□ 센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는 그의 기록과 동료의 증언,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한 가지 원인으로 단순화할 순 없지만 동료들은 승차독식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중략)

20XX년. <<<< <<<<<<를 □□□한 이 모 씨가 ○○차의 □□□ 총책임자, 센터장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가 도입한 쏠쏘쏠, 데이터에 기반한 □□□ 시스템은 차량 개발 기한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합니다. (중략)

함께 협업을 해도, 공은 단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리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략)

故 이▽▽ 씨도 그런 스트레스를 메모에 남겼습니다.

“전무님(센터장)한테 보이는 것, 위대한 ◎◎◎◎.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 주는 말들 조심하자.” 제작년 1월 센터장과 면담한 직후에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故 이▽▽ 씨 아내 : “리더십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책을 더 읽고, 밤새워서 연습을 해라.” 센터장의 말대로 이▽▽ 씨는 그날도 회사에서 밤을 새우다, 새벽에 이상증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서른아홉 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 타 사례 07 2022서울조정540, 54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알림보도, 일부 열람차단)

부고(訃告) 기사와 관련, 유족이 문제 삼은 고인의 경력 일부를 열람차단하고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립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인의 부고 기사를 내보내면서, 고인이 1900년 A 대학교 임사이사가 된 뒤 대학 설립자에게서 학교를 인수했다는 등의 경력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의 명칭은 설립자인 고인이 19△△년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처음 사용한 것임에도 1900년부터 A라는 명칭을 사용한 대학교가 설립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이후 인터넷 기사를 한 차례 수정했고, 보도 분량 및 그 표현방식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는 부분은 열람차단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인지 여부를 두고 고인과 A 학원 등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간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신청취지가 부고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법인격)과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법인의 목적사업)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살펴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알림보도 게재 등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는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는 표현 일부는 열람차단하고, 판결문의 문구를 인용해 인터넷신문에 알림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하여 위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일부 열람차단 및 알림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전략) A대 총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XX세. 강원 강릉에서 태어난 고인은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 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림보도] 「[부고] A대 총장 지낸 김□□ 前의원」 관련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고인은 19△△년 A 대학교를 설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일보>☆☆☆으로> 섹션에 알림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일보>☆☆☆으로>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를 삭제한다.

기 타 사례 08 2022서울조정858/859/86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알림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조정대상보도들 가운데 게시물의 조회수 및 댓글수가 많은 일부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만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문화재 수리업체가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뿔질식으로 보수하여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수리업체는 무려 11년간 해당 지역의 문화재의 수리를 독점해왔는데 업체 전·현직 대표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수리업체’로 언급된 자는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보존을 위해 상시적 예방관리 차원의 경미한 수리만을 담당하는 ‘문화재돌봄단체’에 해당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업무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전혀 무관함에도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들이 문화재수리업체에 불신을 갖는 등 신청인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와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TV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의 열람차단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법과 규정을 전달할 때는 분명히 ‘돌봄사업’임을 밝혔고, ‘수리업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정보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문화재수리법상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각 조정대상보도가 중앙·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방송됐고 방송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TV 채널에 중복 게재되어 있는바, 모든 보도(또는 보도 영상) 하단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알림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게재하되,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조회수 및 댓글수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보도에 한하여 원보도 하단에 알림보도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억 원씩 들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땀질식으로 보수해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4백 년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XX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 △△서원입니다. 20XX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수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벽체와 기단, 처마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덧씌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수리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② **(전략)** 그러나 부실 보수공사의 이면에 자치단체와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시멘트로 땀질 보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 △△서원'입니다.

수리를 맡은 업체는 앞서 20XX년에도 서원 □□□ 기단을 수리하면서 시멘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시 조치는 하나 마나 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실토합니다. **(중략)**

해당 업체를 취재해 봤더니 설립 당시 대표부터 현 대표까지 4명 가운데 3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고 10년 넘게 문화재 돌봄사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문화재 훼손 등 지침을 위반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 단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③ ○○의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땀질식 보수하면서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리 업체는 무려 11년간 해당 지역의 문화재 수리를 독점해 왔는데, 업체 전·현직 대표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중략)**

서원 수리가 이뤄진 건 20XX년부터 해마다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리 업체는 시멘트 사용을 부인했지만, 업체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시멘트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중략)**

④ ◇◇◇ 보도 이후 ○○시가 긴급 조사한 결과 세계문화유산 ○○ △△서원의 시멘트 땀질 보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문화재청의 허술한 사업추진 지침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침을 보면,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점검만 할 뿐, 현장 실사나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리 업체가 문제를 파악해 보고하지 않는 이상 관리 당국이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리자격이 없어도 경험만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보고를 누락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후략)**

⑤ **(전략)** 시멘트로 땀질 보수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서원.

취재 당시, 시멘트 사용을 전면 부인했던 수리 업체는 ◇◇◇ 보도 이후 ○○시의 조사가 시작되자 세계유산 지정 전 시멘트 보수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리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한 게, 보수했던 게 수천 건입니다. 수만 건 안 되겠나 싶은데. 근데 그런 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중략)**

문화재청은 땀질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허술한 지침에 대해서도 보고와 평가 체계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⑥ **(전략)** ◇◇◇는 ○○ △△서원을 비롯한 지역 문화재들이 시멘트로 땀질 보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략)**

수리를 진행한 업체는 시멘트 사용에 대해 “세계유산 지정 전의 일이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해당 수리 업체를 추적해봤습니다. 10년 넘게 ○○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보수 사업을 독점했는데, 최근 올해부터 20XX년까지 진행되는 수리보수 사업 공모에도 경쟁업체 4곳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 대표 4명 가운데 3명이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중략)**

현 지침을 보면,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점검만 할 뿐, 현장 실사나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리 업체가 문제를 파악해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관리 당국이 사전에 문제를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수리자격이 없어도 경험만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보고를 누락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 보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서원 수리를 담당한 업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상시적인 예방관리 차원의 경미한 수리만을 담당하는 ‘문화재돌봄단체’로,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업무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5건의 보도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5건의 보도 영상 각 하단에 알림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기 타 사례 09 2022대구조정97·98/99·100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후속보도)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당 신고가 '오인신고'라는 취지의 후속보도가 게재돼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양마와 대마, 마리화나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어서 재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관련 전문가 발언을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카페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환각 성분이 없는 '양마'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시 '대마나 마리화나가 아닌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이라는 시료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단체의 명예와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카페를 방문,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객관적 사실과 전문가 등의 순수한 의견표명을 보도한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임이 확인되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사정 등을 고려,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후속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문안 검토를 위한 속행 일정을 정하는 과정 중에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가 '오인 신고'였다는 취지의 후속보도가 게재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해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국내 첫 '○○ △△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 ◇◇의 한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카페는 □□도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최대 5년간 월 1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료 채취 결과는 2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麻) 대부분은 모형인데, 이 중 일부가 대마 혹은 마리화나라고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며 “업주는 양마(洋麻, kenaf)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쉽지 않아 정확한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다만 이 업체가 식약처의 재배 허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약에 재배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에서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의 헴프 관련 전문가는 “양마와 대마, 마리화나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어서 재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략)

신청 후 보도문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 카페서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는 ‘오인 신고’

본문내용: □□ ◇◇의 한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고 접수된 의심 신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의심 신고 접수 이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5일과 7일, 두 차례 해당 카페를 방문,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 9월 15일 ‘대마나 마리화나가 아닌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이라는 시료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인이 대마와 양마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잘 못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카페 내 전시 중인 대마 모형은 영화 소품용 조화로 밝혀졌다.

세계 3대 섬유식물 중 하나인 양마는 고급 제지, 친환경 벽지, 자동차 프레임, 기능성 의류 등의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환각성은 없으며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카페를 찾아 시료를 채취했다”면서 “이 시료에 대한 마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카페 관계자는 “오인 신고로 그동안 사회적 기업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와 사업상 신뢰 관계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컸다”며 “카페 ▽▽▽은 ◎◎◎◎◎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와 ○○○ △△ 규제자유특구인 ◇◇에서 △△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한 카페다. 더는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